

의안번호	제2736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3. 12. 22.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2. 22.

제 출 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023.12.14.)

##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1) 3급: 0명 → 1명 (증1명)
- 2) 4급: 5명 → 4명 (감1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행정절차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복지지원과-48215(2023. 12. 18.)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생략(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2) 규제심사
- 3) 부패영향평가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65	20	142	28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60	20	116	27	194
4급	5	4		1		
5급	44	19	3	6	2	14
6급 이하	662	337	17	103	25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65	20	142	28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60	20	116	27	194
3급	1	1				
4급	4	3		1		
5급	44	19	3	6	2	14
6급 이하	662	337	17	103	25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b>총 계</b>	749	365	20	142	28	194	<b>총 계</b>	749	365	20	142	28	194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b>일반직 계</b>	717	360	20	116	27	194	<b>일반직 계</b>	717	360	20	116	27	194
4급	5	4		1			3급	1	1				
5급	44	19	3	6	2	14	4급	4	3		1		
6급 이하	662	337	17	103	25	180	5급	44	19	3	6	2	14
전문경력관	6			6			6급 이하	662	337	17	103	25	180
<b>별정직 계</b>	1	1					전문경력관	6			6		
6급상당 이하	1	1					<b>별정직 계</b>	1	1				
<b>연구직 계</b>	5	3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관	0						<b>연구직 계</b>	5	3		1	1	
연구사	5	3		1	1		연구관	0					
<b>지도직 계</b>	25			25			연구사	5	3		1	1	
지도관	1			1			<b>지도직 계</b>	25			25		
지도사	24			24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직의 직급 조정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이 없어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⑥ 생략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 ⑧~⑨ 생략

###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⑤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